

「보험업법 시행령」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('23.10.13. ~ 11.22.)

- ◆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('23.7.17.)에서 발표한 「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」에 따라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시행령 개정 추진

10.13일(금),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에 발표한 「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」에 따라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이행해야 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고 「보험업법 시행령」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('23.10.13. ~ 11.22.)하였다.

지난 4월 개최된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에서 건의 사항 중 하나로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.

현재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, 그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. 그런데, 사전신고 대상이 보험업, 보험대리점업무, 투자자문업, 투자일임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, 그 외에는 전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때 금융위원회 승인과 관련된 절차진행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다.

- * ①사전신고 : 보험업, 보험수리업무, 손해사정업무, 보험대리점업무, 보험리서치 업무, 투자자문업, 투자일임업, 집합투자업, 부동산업(영 제59조제3항제15호)
- ②금융위원회 승인 : 사전신고 대상 외 외국에서 하는 사업 전부

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.

첫째, 현재 보험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. 보험회사가 국내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때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업무로서 헬스케어,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,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의 업무는 사전신고 대상(영 제59조제3항제1호~제14호)이다. 앞으로는 국내 절차와 동일하게 헬스케어 등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업무에 대해 해외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때에도 금융위원회 승인이 아닌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한다.

둘째, 추가로 해외에서 보험중개업 및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한다. 보험중개업무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로서 보험업과 밀접한 업무이므로, 이미 사전신고로 운영하고 있는 보험수리업무, 보험대리점업무 등과 같이 신고 대상으로 포함한다. 역외금융회사*의 경우, 현재 「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사전신고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신고 대상으로 변경할 계획이다.

*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,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(「외국환거래규정」§1-2)

향후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보험회사들이 자회사 소유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려 할 때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낮아짐으로써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이 외에도 보험개발원이 보험업법에 따라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(금융감독원 위탁)에 신고한 경우, 금융감독원이 이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사망률 기초통계 검증에 필요한 민감정보(주민등록번호)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.

또한, 2024년부터는 신용카드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각 보험회사별 판매비중을 25% 이하*로 유지해야 하나, 하나의 신용카드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4개 이하여서 규제비율을 준수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각 보험회사별 판매비중을 50% 이하로 허용할 예정이다.

* 신용카드사의 보험회사별 판매비중 : ('22) 50% 이하 → ('23) 33% 이하 → ('24) 25% 이하

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0.13일(금)부터 11.22일(수)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, 이후 법제처 심사, 차관회의·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'24.1.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
<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>

- 예고기간 : 2023.10.13일(금) ~ 2023.11.22일(수), (40일)
-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)
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·전화번호

- 일반우편 :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보험과
- 전자우편 : soonsee@korea.kr - 팩스 : 02-2100-2933

※ 개정안 전문(全文)은 “금융위 홈페이지(www.fsc.go.kr) > 정책마당 > 법령정보 > 입법예고/규정변경예고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보험과	책임자	과 장	신상훈 (02-2100-2960)
		담당자	사무관	고선영 (02-2100-2961)
<공동>	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	책임자	국 장	문형진 (02-3145-7460)
		담당자	팀 장	오충건 (02-3145-7450)



참 고

현행 국내외 자회사 소유시 승인·신고·보고 절차

구분	금융위원회 승인 대상	사전신고 대상	사후보고 대상
해외 자회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외국에서 하는 사업 (* 사전신고 대상 해외사업 外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외국에서 하는 사업 중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험업 - 보험수리업무 - 손해사정업무 - 보험대리업무 - 보험에 관한 금융리서치업무 - 투자자문업 - 투자일임업 - 집합투자업 - 부동산업 	-
국내 자회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융업 (* 단,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비 금융주력자인 경우 은행 소유 불가) • 신용정보업 • 채권추심업 • 보험계약 유지, 해지, 변경, 부활 등을 관리하는 업무 • 그 밖에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업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인신용정보관리업 - 기업의 후생복지에 관한 상담 및 사무처리 대행업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옥관리업무 • 보험수리업무 • 손해사정업무 • 보험대리업무 • 보험사고·보험계약 조사업무 • 보험관련 교육, 연수, 도서출판, 금융리서치, 경영컨설팅 업무 • 보험업 관련 전산시스템, 소프트웨어 등의 대여, 판매, 컨설팅 업무 • 보험관련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제공업무 • 자동차 관련 긴급출동, 차량관리, 운행정보 등 부가서비스 업무 •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위험 관리 업무 • 건강, 장묘, 장기간병, 신체장애 등의 사회복지사업 및 관련 조사, 분석, 조언업무 •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조사·분석·조언 업무 • 건강 유지·증진, 질병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업무 •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•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사업 • 선박투자회사의 업무 •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 • 투자회사 또는 기관전용 사모 집합투자기구가 하는 업무 • 자산유동화업무 및 유동화 자산의 관리업무 • 그 밖에 위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

* 보험업법 제115조(자회사의 소유)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(자회사의 소유)